
第12回서울特別市議會(定期會) 財務經濟委員會會議錄 第4號
서울特別市議會事務處

日時 1994年12月20日(火) 午前10時

場所 財務經濟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1. 서울特別市行政權限委任條例改正條例案
 2. 서울特別市勤勞者厚生施設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3. 서울特別市物品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4. 서울特別市稅減免條例案
 5. 서울特別市統合公課金徵收事業및特別會計設置條例廢止條例案
 6. 서울特別市公有財產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7. 1994市有財產管理計劃下半期變更(追加)2次計劃同意案
 8. 1995市有財產管理計劃同意案
 9. 1994年度行政事務監查結果報告書採擇의件
-

審査된案件

1. 서울特別市行政權限委任條例改正條例案(서울特別市長 提出) ... 7面
2. 서울特別市勤勞者厚生施設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서울特別市長 提出) ... 7面
3. 서울特別市物品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서울特別市長 提出) ... 20面

4. 서울特別市稅減免條例案(서울特別市長 提出) ... 20面
 5. 서울特別市統合公課金徵收事業및特別會計設置條例廢止條例案(서울特別市長 提出) ... 20面
 6. 서울特別市公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서울特別市長 提出) ... 20面
 7. 1994市有財産管理計劃下半年變更(追加)2次計劃同意案(서울特別市長 提出) ... 20面
 8. 1995市有財産管理計劃同意案(서울特別市長 提出) ... 20面
 9. 1994年度行政事務監査結果報告書採擇의件 ... 59面
-

(10時 38分 開議)

○委員長 李聲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12回 定期會 第4次 財務經濟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議事棒 3打)

존경하는 委員 여러분 그리고 企劃管理室長과 關係公務員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년은 어느 해보다 우리 모두에게 警覺心을 일깨워 주는 大型事故가 많은 한 해였습니다. 그리고 또 서울은 定都 600年을 맞이하여 市民和合과 21世紀 世界 中心都市로 거듭 태어나기 위한 世界化, 未來化를 構想하고 準備하는 뜻깊은 한 해였습니다.

또한 우리 모두가 市民의 바람이 市政에 反映되고 市民生活를 풍요롭게 하고자 노력하여 왔습니다만, 한 해가 마무리되는 現時點에서 돌이켜보면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지난 1年 동안 各種 案件의 處理와 行政事務監査, 決算案 및 豫算案의 審査 등을 위한 委員會 活動에 있어 委員長으로서 미숙한

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幹事님과 委員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協助 및 指導 鞭撻로 우리 委員會가 원만히 運營된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또한 企劃管理室長과 關係公務員 여러분께서도 그 동안 市民 福利增進과 市民이 바라는 市政을 具現하기 위하여 우리 委員들의 많은 질타와 是正 要求에 성심성의껏 잘못된 事項은 改善하고, 더욱 성숙된 자세로 市政을 具現하고자 노력해 주신 데 대하여 同僚委員들을 代表해서 심심한 감사를 포함합니다.

밝아오는 乙亥年에도 議會와 執行部가 서로 합심하여 더욱 알차고 보람있는 市政을 具現함은 물론 疏外된 階層의 福利 厚生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고, 世界化, 未來化의 主役都市로서 競爭力을 갖춘 서울을 만들 것을 다짐하면서 우리 모두에게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議事日程에 들어가기 전에 新任 企劃管理室長으로부터 新任人事를 듣고 企劃管理室 新任幹部를 紹介받도록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나오셔서 新任人事 및 企劃管理室 新任 幹部를 紹介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金義在; 企劃管理室長 金義在입니다.

존경하는 李聲九 委員長님 그리고 財務經濟委員會 委員님 여러분, 지난 7日 人事發令에 의해서 새로 赴任한 이후 財經委員會 委員님 여러분께 이제서야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로 不足한 제가 企劃管理會長이라는 重責을 맡게 되어 무거운 責任感이 앞서고 있습니다만, 겸허한 자세로 배우고 研究하면서 熱과 誠을 다하여 市民을 위한 市政이 이루

어지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委員님 여러분께서 변함없이 따뜻한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도와주시고 指導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定期會에서 1995年度 우리 市豫算案과 基金運用計劃 그리고 94年度 追更豫算案을 審議 議決하여 주신데 대하여 委員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 자리에 계신 廉東秀 委員長님께서 豫算決算特別委員會 委員長으로서 밤이 늦도록 진지한 討議와 審議를 主宰하시면서 千百萬市民을 위한 豫算을 이루기 위하여 渾身の 노력을 다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廉東秀 委員님의 勞苦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존경하는 財經委員會 委員님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企劃管理室에서는 보다 알차게 市 살림을 運營하고 市民을 위한 市政을 具現해 나가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行政機構를 과감히 統·廢合하고 定員을 減縮하여 보다 간소하고 능률적인 組織으로 運營하는 한편, 豫算의 낭비적인 要因을 除去하고 執行의 효율성을 최대한 높여 健全財政을 運營하도록 하는 데 많은 힘을 기울여 왔습니다. 또한 市民生活에 불편을 주거나 競爭力을 沮害하는 불합리한 制度와 運營方法을 改善하여 市民便宜를 增進하고 서울의 都市競爭力을 強化하는 데 노력해 왔습니다. 그리고 各種 施策事業의 審査分析에서부터 法規의 整備, 投資 優先順位 調整, 業務의 電算化 등에 힘쓰는 한편, 市政 全般에 걸친 生活改革과 서울 새로운 탄생을 目標로 한 서울600年事業 등 市民生活의 質을 한 段階 높이기 위한 事業들을 중점적으로 推進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聖水大橋事故를 비롯해서 阿峴洞 都市가

스供給基地 爆發事故 등 市民의 生命과 財産을 앗아가는 都市災害가 發生하여 市民生活을 불안하게 하기도 하였으며, 아직도 많은 部分에서 미흡한 점이 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市民生活의 安全과 福祉 水準의 向上에 힘쓰며 水準 높은 市政을 펼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저희 企劃管理室에서는 地方化·世界化時代에 副應하는 施策들을 적극 開發하여 推進하면서, 더욱 알찬 市 살림을 運營할 수 있도록 市政의 經營化를 위한 市政 全般에 걸친 經營診斷을 實施하고, 企劃管理室의 豫算管理와 投資審查 및 審査分析 機能을 더욱 활성화하여 健全財政을 이룩하기 위한 財政 運用의 효율성 확보에 최대한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豫算審查와 行政事務監査 過程에서 委員님 여러분께서 提示해 주신 高見과 指導해 주신 事項은 그 뜻을 市政에 최대한 反映함으로써 市民을 위한 市政으로 거듭나는 地方自治時代에 걸맞는 水準 높은 奉仕行政으로 發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企劃管理室 主要業務를 推進해 나감에 있어 委員님 여러분과 協議하고 指導를 받으며, 아울러 委員님 여러분의 議政活動에도 모자람이 없도록 모든 支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도의 議政活動을 決算하는 이번 定期會가 더욱 훌륭한 結實을 거둘 것으로 期待하면서 금년 한해 동안 委員長님과 委員님 여러분들의 勞苦에 다시 한 번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앞으로 더욱 委員님들의 倍前의 指導와 協助가 있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인사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지난 12月 5日 財務經濟委員會 이후 새로 任命된 우

리 室의 新任 幹部를 紹介해 올리겠습니다.

(幹部紹介:財政企劃官 金光市, 企劃擔當官 林載五, 豫算擔當官 崔永福, 市政開發擔當官 金基同, 技術審査擔當官 李仁根)

前任 金相敦 企劃擔當官은 世宗文化會館 事務局長으로, 그리고 前任 申東雨 豫算擔當官은 公報官으로 각각 昇進 任用 되었으며, 陳英浩 財政企劃官은 城北區廳長으로, 張錫孝 技術 審査官은 道路局長을 兼任토록 發令이 났습니다. 그리고 金瑾 燮 技術審査擔當官은 下水處理課長으로 榮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新任 幹部紹介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曹相彩 委員; 企劃室長, 좀 앞으로 나와 주세요.

우리 財務經濟委員會는 서울市議會에서 가장 모범 委員會이고, 또 執行部하고 우리 常任委員會 하고는 가장 協助가 잘 되고 있는 委員會입니다. 지난 번에 서울市長이 우리 市議會 를 처음 訪問했을 때는 施政演說을 한 때였습니다. 市議員들과 相見禮 한 마디도 없이 本會議에서 施政演說을 하고 그것이 인사이고 또 市長으로서 경의 표시를 다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企劃室長도 財務經濟委員들과하고 公私間에 인사 한 마디 없이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뵙게 되는데, 이래도 되는가, 평소 제가 金義在 管理官을 알고 있기로는 아주 훌륭하고 또 서울市 公務員 가운데 高級公務員으로서 훌륭한 분으로 알고 있는데, 企劃管理室長이 되니까 그런 것인지 아니면 평소에 그런 자세로 公職에 임하고 있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企劃管理室長 金義在; 대단히 미안합니다.

제가 人事發令이 있는 뒤에 委員님들을 찾아 뵙고 인사를 올렸어야 옳는데, 그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參考를 해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曹相彩 委員; 앞으로 잘하신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理由가 무엇인가를 묻고 있습니다. 그 理由가 왜 그랬어요, 마빠서 그런 것이에요? 우리 常任委員會를 지금 輕視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企劃管理室長 金義在; 常任委員會를 輕視한 것은 아니고, 제가 여기서 理由나 이런 것을 핑계를 대지 않겠습니다. 제 불찰입니다.

○曹相彩 委員; 앞으로 좀 똑똑히 해 주세요. 企劃管理室長 職責이라는 것이 중요하고, 또 우리 서울市議會에서나 執行部에서 財務經濟委員會 役割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명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金義在; 알겠습니다.

-
1. 서울特別市行政權限委任條例改正條例案(서울特別市長 提出)
 2. 서울特別市勤勞者厚生施設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서울特別市長 提出)

(10時 48分)

○委員長 李聲九; 그러면 議事日程에 들어가겠습니다.

議事日程 第1項 서울特別市行政權限委任條例改正條例案과
議事日程 第2項 서울特別市勤勞者厚生施設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을 一括上程합니다.

(議事棒 3打)

議事日程 第2項 서울特別市勤勞者厚生施設設置條例中改正條

例案에 대한 提案說明과 檢討報告는 지난 第73回 臨時會 때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議事日程 第1項 서울特別市行政權限委任條例改正條例案에 대한 提案說明과 檢討報告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特別市長을 代理하여 企劃管理室長 나오셔서 提案說明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金義在; 오늘 우리 室이 市議會에 提出한 條例改正案의 審議를 要請함에 즈음해서 그 背景과 主要內容을 說明드리고 여러 委員님들의 積極적인 協助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區廳長 및 事業所長에게 行政事務를 權限 委任하여 온 것이 470個 事務로 地方事務는 地方自治法 第95條에 根據하여 서울特別市行政權限委任條例로 委任하고, 國家事務는 行政權限의委任및委託에관한規程 第4條에 의거 委任機關의 長의 承認을 얻어 서울特別市行政權限委任規則으로 委任하는 것이 원칙이나 서울特別市에서는 事務의 區分없이 서울特別市行政權限委任條例로서만 委任하고, 또한 單位事務別로 세분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委任하여 옴으로써 事務 種類에 따른 委任 또는 再委任 根據의 불명확으로 司法機關에서 權限無效, 訴訟當事者 適格問題가 發生하고, 또한 母法令 根據 및 委任事務의 限界 불명확으로 市·區間의 事務 紛爭의 素地 등 많은 問題點을 안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行政權限委任法規를 全面 再整備함에 있어서 事務의 種類에 따른 委任根據 및 單位事務의 母法根據를 명확히 하고자 종전 條例에서 포괄 委任해 오던 事務를 單位事務別로 세분화하고, 事務를 地方事務와 國家事務로 區分 整備함에 따라 종전의 470個 委任事務가 總 865個 事務로 대폭 增加

하였으며, 이 中 735個 事務는 기이 委任된 事務이고 130個 事務는 新規로 追加 委任하는 事務이며, 總 865個 事務 中 地方事務로 分類 整備되어 서울特別市行政權限委任條例에 의하여 委任하는 事務가 356個 事務, 國家事務로 分類 整備되어 서울特別市行政權限委任規則에 의거 委任하는 事務가 509個 事務입니다.

금번 上程한 改正條例案은 地方事務로 分類整備된 356個 事務를 서울特別市行政權限委任條例에 의하여 區廳長 및 事業所長에게 委任코자 하는 것으로, 356個 事務 中 313個 事務는 종전 條例에 의거 既已 權限委任하여 處理하고 있는 事務이며, 43個 事務는 地域實情에 맞게 新規로 追加 委任하는 事務입니다. 그 細部內容은 改正條例案을 參考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改正條例案은 行政事務의 委任根據를 명확히 하고 地域 實情에 맞는 行政 遂行으로 行政의 효율성과 地方自治의 활성화에 寄與하기 위한 것으로 原案대로 通過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聲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의 檢討報告를 듣겠습니다.

○專門委員 安錫洙; 專門委員입니다.

서울特別市行政權限委任條例改正條例案에 대한 檢討結果를 報告드리겠습니다. 報告書 2쪽이 되겠습니다.

서울特別市行政權限委任條例改正條例案의 主要內容은 現行 서울特別市行政權限委任條例를 整備하여 서울特別市長의 權限에 속하는 事務 中 民願에 관한 事務와 政策의 具體化에 따른 執行事務, 日常的으로 반복되는 事務를 委任하고, 區廳長의 再委任 根據의 마련 및 既委任事務 313個, 新規 委任事

務 43個, 總 356個 事務를 委任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地方事務와 機關委任事務 區分에 따라 權限委任根據 法令 變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서울特別市行政權限委任條例에서는 地方事務와 機關委任事務의 事務 區分없이 전부 條例로 行政權限을 委任하고 있으나 改正條例案에서는 地方事務는 서울特別市行政權限委任條例로 委任하고 機關委任事務는 서울特別市行政權限委任規則으로 委任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地方自治法 第95條에 의하면 地方事務는 條例로 委任하도록 規定하고 있고, 固有事務에 대하여는 行政權限委任委託에 관한規程 第4條에 의하여 委任機關의 長의 承認을 얻어 規則으로 委任하도록 되어 있어 地方事務와 機關委任事務에 대하여 각각 條例와 規則에 의한 行政權限을 委任하는 것은 法上 瑕疵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356個 事務委任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區廳長 및 事業所長에게 委任하고자 하는 地方事務는 既委任事務 313個, 新規 委任事務 43個, 總 356個 事務입니다. 現行 條例에서는 地方事務와 機關委任事務 區分없이 條例로서 局別 單位로 470個 事務를 포괄 委任하였으나 改正條例案에서는 地方事務에 대하여 課別 單位로 356個 事務를 個別 委任하여 委任根據를 명백히 한 것입니다. 機關委任事務에 대하여는 規則으로 委任하고자 除外되었으며, 그 事由는 地方事務와 機關委任事務 區分으로 權限委任 根據法令을 變更함에 따른 것입니다. 新規 委任事務는 內務局, 保健社會局, 産業經濟局, 住宅局, 道路局, 消防本部所管 43個 事務로 市民 便益과 行政能率 向上 圖謀 次元에서 별도 問題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報告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聲九;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提案說明과 檢討報告를 들었습니다.

案件을 효율적으로 處理하기 위해서 案件別로 分離 審査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議事日程 第1項 서울特別市行政權限委任條例改正條例案을 審査하겠습니다.

同 案件에 대하여 質疑하실 委員께서는 質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質疑 없으면 넘어 갑시다」 하는 委員 있음)

質疑하실 委員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質疑하실 委員이 없으시면.....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質疑하실 委員이 없으면 이상으로 議事日程 第1項 서울特別市行政權限委任條例改正條例案에 대한 質疑 答辯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서울特別市行政權限委任條例改正條例案을 서울特別市長이 提出한 原案대로 議決하고자 하는데 異議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異議 없으시면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議事棒 3打)

.....

(참조)

서울특별시 행정권한위임조례개정조례안

(뒤에 실음)

.....
○委員長 李聲九; 다음은 議事日程 第2項 서울特別市勤勞者 厚生施設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을 審査하겠습니다.

同 案件에 대해서 質疑하실 委員께서는 質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鄭興鎮 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興鎮 委員; 鄭興鎮입니다.

지난 우리 會議에서 제가 이 勤勞者 厚生施設에 대해서 保留를 하자고 主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企劃管理室長 말이에요, 이것이 保社委員會에서 豫算이 全面 削減되고 編成되지 않았지요?

○企劃管理室長 金義在; 네, 안 됐습니다.

○鄭興鎮 委員; 지난번에 國際交流基金 그 問題도 文化教育委員會에서 豫算이 編成됐지요?

○企劃管理室長 金義在; 네.

○鄭興鎮 委員; 아, 生活環境委員會라고 합니다, 生活環境委員會. 우리 室長님께서도 이제 막 오셨고 저도 실수했습니다.

國際交流基金이라고 해서 5億원을 文化教育委員會에서 이미 豫算이 編成된 뒤에 우리 財務經濟委員會에 그 案件이 上程되어서 여기에서는 그런 基金을 낼 수 없다.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만, 이미 文化教育委員會에서는 豫算이 編成되고 可決되었어요.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勤勞者 厚生施設, 이 問題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問題點을 指摘하고 좀더 檢討하고 더 論議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미 生活環境委員會에서 豫算을 全面 削減함으로써 이것은 있으나마나한 일입니다. 이 말씀은, 다시 말씀드려서 企劃室所管 業務를 財務經濟委員會

에 이런 案件을 上程한 것조차가 의심스럽다 그 말입니다. 속 빈 강정을 가지고 와서, 적어도 企劃室에서 이런 問題가 있으면 먼저 다루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該當 常任委員會에서 決定을 할 일이지, 이미 豫算이 없는데 이것 解體하는 것이 마땅한 일 아납니까? 答辯 좀 해 보세요, 이 問題에 대해서.

○企劃管理室長 金義在;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施設 자체를 該當 局에서 該當 委員會에 報告를 하고 이미 施設 자체가 解體가 됐습니다.....

○鄭興鎭 委員; 아니, 그 內容은 제가 더 잘 알아요, 이제 오셨으니까.

이것을 다루었는데, 그것이 불필요하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 企劃파트예요, 먼저 計劃이 세워지고 그 實行이 되어야 할 것 아납니까?

그런데 이미 實行이 되고 나서 企劃을 이제 하는 격이나 같잖아요, 순서가 바뀌었어요. 手順과 節次가 바뀌었다 그 말입니다. 企劃파트면 여기서 먼저 그 內容이 다루어지고 나서 豫算이 編成되거나 削減되거나 이렇게 削除되거나 해야 하는데 이미 豫算은 완전히 決定난 다음에 여기에 와서 그것을 다룬다고 하면 이것은 거짓말 아납니까, 이것은 節次가 뒤바뀐 것 아납니까?

○企劃管理室長 金義在; 그 問題는 該當 執行局에서 일단 方針이 決定이 되면 그 事業 자체에 대한 企劃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 該當 局에서 事業을 計劃을 해서 事業을 推進하는 것이고, 저희는 豫算에 대한 支援을 하는 그런 參謀機能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鄭興鎭 委員; 企劃室 機能이 그래요?

○企劃管理室長 金義在; 네, 그렇습니다.

○鄭興鎮 委員; 다시 한 번 말씀하세요, 理解가 잘 안 되는데.

○企劃管理室長 金義在; 그러니까 執行部署에서 特定事業을 하는 計劃을 하고, 그 計劃이 저희 企劃管理室에 豫算이 필요하다든지 職制가 필요하다든지 할 때 저희가 市長의 參謀로서 거기에 協助하고 助言하고 하는 機能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事業에 대해서는 當該 執行局에서 事業 자체가 불필요해서 廢止를 했을 경우에 저희가 그 事業을 다시 해야 된다는 판단을 한다거나 하는 일은 그 計劃局的 協助를 받지 않고 저희가 할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鄭興鎮 委員; 알았어요.

그러면 그 執行局에서 該當 常任委員會에 그것을 물어야 하고 그래야 하는데 왜 여기에 가져 왔습니까? 왜 財務經濟委員會에 이런 問題를 가지고 옵니까?

○企劃管理室長 金義在; 職制와 관계 있는 條例는 財務經濟委員會를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財務經濟委員會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上程이 된 것입니다.

○鄭興鎮 委員; 企劃管理室의 役割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企劃管理室이 뭐 하는 곳입니까?

○企劃管理室長 金義在; 企劃管理室의 業務內容을 말씀드리라는 말씀이십니까?

○鄭興鎮 委員; 네.

○企劃管理室長 金義在; 그것은 저희 職制에 있는 대로.....

○鄭興鎮 委員; 文字 그대로 서울시 行政을 企劃하는 곳 아닙니까?

○企劃管理室長 金義在;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委員님이 말씀하시는 서울시의 모든 業務를 저희가 企劃하는 것은 아

됩니다. 그것이 아니고, 執行部署의 각 局에 있는 事業計劃은 그 事業 局에서 計劃을 하고, 거기에 따르는 職制問題라든지 豫算問題라든지 法律問題라든지 그 事後 판단이라든지 이런 問題를 市長의 參謀機能으로서 하는 것이 企劃管理室의 役割입니다.

○鄭興鎭 委員; 서울시의 行政이, 예를 들어서 무슨 일을 알아보려면 서로 자기의 管轄을 잘 모릅니다, 分掌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그러면 企劃管理室이 서울시 行政의 管理, 運營 또 企劃, 이런 部署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執行局에서 그런 計劃을 세웠어도 결국 企劃室長에게 報告가 되는 것 아닙니까?

○企劃管理室長 金義在; 報告가 됩니다.

○鄭興鎭 委員; 그러면 그 決定權은 어디에 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金義在; 決定權은 執行 局에 있고 최종적으로는 市長님한테 있습니다.

○鄭興鎭 委員; 그러면 企劃室長의 役割은 뭐니까?

○企劃管理室長 金義在; 그것은 市長의 參謀입니다.

○鄭興鎭 委員; 參謀요?

○企劃管理室長 金義在; 네. 예를 들면 保社局에서 어떤 事業計劃을 하지 않습니까, 그 事業에 대한 豫算이 뒷받침되어야 된다는지, 機構가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는지, 法律的인 補完을 한다는지 하는 部分에 대한 助言과 또 支援을 하는 그런 部署입니다.

○鄭興鎭 委員; 좋습니다.

그래서 이 勤勞者 厚生施設問題에 대해서 廢止, 存置 이 問題 가지고 지난 時間에 이것을 해 왔어요. 質疑와 答辯을 해 왔어요. 그래서 그 부당함이라든가 합리적인 運營方法에 대해

서 얘기해 왔어요, 그런데 지금 現 時點에서 보면 生活環境委員會에서 豫算으로 완전히 그것이 削除됨으로써 廢止가 분명해 졌어요. 存置 여하가 분명해졌어요, 그럼 이것이 條例問題라고 하지만 條例의 可決을 가지고만 얘기해야 합니까, 本 常任委員會에서?

○企劃管理室長 金義在; 그렇습니다.

○鄭興鎭 委員; 그러니까 條例에 관한 可決인데, 이것이 옳고 그름을 따지는 곳 아닙니까, 여기가. 이 常任委 자체가.

○企劃管理室長 金義在; 글쎄요, 만일에 生活環境委員會에서 論議된 內容이 우리가 市 전체적인 立場에서 볼 때 심히 부당한 內容이 있다든지 하면 여기서 그것을 따질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미 執行局에서 그런 存置 與否에 대한 판단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事後에 機構를 調整해 달라는 依賴가 있기 때문에 그 本質에 대한, 事業 本質에 대한 그것보다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問題에 대해서는 여기서 그것을, 예를 들면 바늘과 실로 區分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늘이 가는 데 실이 따라가듯이 그런 節次를 밟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鄭興鎭 委員;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議會에서도 常任委員會끼리 相衝되는 이런 問題가 이렇게 되어 왔어요, 文化敎育委員會나 지금 生活環境委員會나. 그러면 결국에 이것이 예를 들어서 生活環境委員會에서 豫算이 削除되었다 하더라도 財務經濟委員會에서 이것이 否決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企劃管理室長 金義在; 否決된다고 그러면 지금 事業은 存置하지 못하면서 그 機構가 存續하는 그런 비정상적인 그런 狀態가 지속되리라고 봅니다.

○鄭興鎭 委員; 제 자신도 行政府에 대해서 業務分掌에 자신

이 없어요.

너무나 방만하고 어지러워져 있어요. 뿐만이 아니라 우리 서울市議會 常任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좀 留意해야 하실 것은 적어도 이런 問題가 있으면 먼저 企劃室所管인 財務經濟委員에게 說明을 갖는 것이 順序라고 봅니다. 그리고 나서 該當 常任委員會에서 豫算에 대한 編成이라든가 그런 決定을 하는 것이 順序라고 봅니다. 이미 決定난 것을 여기서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우리 委員會끼리 背馳되는 일로 서로 다투게 되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憂慮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적어도 企劃室에서는 이런 것은 事前 說明을 해서 우리가 理解를 갖도록 이렇게 하는 順序가 마땅한 것 아닙니까?

○企劃管理室長 金義在;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反對로 했던 것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執行部署에서 그런 事業計劃에 대한 變更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따르는 豫算問題라든지 職制問題라든지 法制問題라든지 이런 問題가 提起가 되면 저희 委員會에다 附議를 하고, 또 財務經濟委員會하고 生活環境委員會하고 意見이 다를 경우에는 그 調整節次를 밟았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鄭興鎭 委員; 핵심적으로 생각해 보자면 그 말씀입니다. 적어도 우리 財務經濟委員會의 固有業務가 이런 條例를 改正하고 通過하고 하는 우리 所管 業務에 대해서는 좀 配慮를 하셔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해서 委員會끼리 서로 背馳되는 意見을 갖거나 相衝되는 일이 없는 것이 事前調律이 아닌가.....

○企劃管理室長 金義在; 앞으로는 만일에 저희 財務經濟委員會하고 執行部署를 管轄하는 委員會의 意見 相衝이 있으면

제가 調整節次를 한번 봐야 보겠습니다, 최종적으로 決定이 되기 전에.

○鄭興鎭 委員; 끝으로 말씀드리지만, 사실은 제가 이 말씀을 해도 자신은 없습니다, 여러 가지 問題에 대해서.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미 지나가 버린, 소위 김빠진 뭇 마시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金義在; 네.

○委員長 李聲九; 이 問題는 지금 우리 鄭興鎭 委員 말씀대로 條例가 先 改正된 후 豫算이 뒤따라서 決定되는 것이 手順인데, 條例를 改正하지 않고 豫算이 먼저 決定되어서 아마 일이 거꾸로 된 것 같습니다. 執行部에서는 이후 이런 일이 없도록 세심한 注意를 당부합니다.

더 이상 質疑하실 委員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質疑하실 委員이 더 안 계시면 質疑 答辯을 終結합니다.

그러면 議事日程 第2項 서울特別市勤勞者厚生施設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을 서울特別市長이 提出한 原案대로 議決하고자 하는데 異議 없습니까?

○鄭興鎭 委員; 잠깐요, 委員長님. 異議는 없는데, 앞으로 이 計劃에 대해서 會議가 끝난 뒤에 報告해 주시기 바랍니다. 福祉施設에 대한 後續措置를 說明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聲九; 계속해서 議決에 들어가겠습니다.

異議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異議 없으시면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議事棒 3打)

.....

(참조)

서울특별시립근로자후생시설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뒤에 실음)

.....
○委員長 李聲九; 委員 여러분 그리고 企劃管理室長과 關係公務員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企劃管理室所管 案件處理를 모두 마치고 停會한 후 午後 2時에 續開하여 財務局所管 案件을 審査하도록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議事棒 3打)

(11時 21分 會議中止)

(14時 38分 繼續開議)

○委員長 李聲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續開를 宣布합니다.

(議事棒 3打)

議事日程에 들어가기 전에 新任 財務局長으로부터 新任人事를 듣고 財務局 新任幹部를 紹介받도록 하겠습니다.

財務局長 나오셔서 新任人事 및 財務局 新任幹部를 紹介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局長 孫長鎬; 지난 12月 7日字 發令에 의해서 文化觀光局長으로 在任하다가 財務局長으로 자리를 옮기게 된 孫長鎬입니다.

赴任 즉시 李聲九 委員長님을 비롯한 委員님 여러분께 일일이 찾아 뵙고 인사를 드림이 예의인 줄 알고 있습니다만, 赴任 이후에 所管業務의 파악과 各種 行事場에 參與하는 등 분주한 나날을 보내느라고 미리 인사를 드리지 못한 점을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를 올립니다.

금년 한해를 마무리짓는 시점에서 돌아보건대 委員님들께서는 우리 市政發展을 위하여 不撤晝夜 헌신 노력하여 오셨습니다. 특히 지난 行政監査 때는 監査活動을 통하여 業務의 미흡한 部分을 指摘 補完토록 함으로써 우리 市 行政의 先進化에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追加更正豫算案의 審議結果 95年度 豫算案 審議 議決은 우리 千百萬 서울市民의 福利增進을 위해서 市民이 낸 稅金을 有效適切하게 使用하라는 뜻으로 이를 겸허이 받아들여 한 푼의 豫算이라도 아껴쓰는 節約行政을 몸소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우리 財務局所管 事項 審議案件도 行政의 효율화를 위하여 꼭 필요한 事案들이오니 配付해 드린 資料를 檢討하시고 議決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幹部紹介:會計課長 林綵瑾)

-
3. 서울特別市物品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서울特別市長 提出)
 4. 서울特別市稅減免條例案(서울特別市長 提出)
 5. 서울特別市統合公課金徵收事業및特別會計設置條例廢止條例案(서울特別市長 提出)
 6. 서울特別市公有財產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서울特別市長 提出)
 7. 1994市有財產管理計劃下半期變更(追加)2次計劃同意案(서울特別市長 提出)
 8. 1995市有財產管理計劃同意案(서울特別市長 提出)

(14時 42分)

○委員長 李聲九; 수고하셨습니다.

議事日程에 들어가겠습니다.

議事日程 第3項 서울特別市物品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議事日程 第4項 서울特別市稅減免條例案, 議事日程 第5項 서울特別市統合公課金課徵事業및特別會計設置條例廢止條例案, 議事日程 第6項 서울特別市公有財產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議事日程 第7項 '94市有財產管理計劃下半期變更(追加)2次計劃同意案 그리고 議事日程 第8項 95市有財產管理計劃同意案을 一括上程합니다.

(議事棒 3打)

먼저 서울特別市長을 代理하여 財務局長 나오셔서 提案說明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局長 孫長鎬; 財務局所管 條例改正案 4件 및 同意案 2件 등 總 6件에 대해서 說明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議案番號 1188號인 서울特別市物品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市 所有物品의 효율적이고 적절한 管理로 市 財政의 건전한 運營을 도모하기 위하여 物品買入要求의 一元化, 不用處分 鑑定額의 上向調整, 備品區分 基準調整 등을 현실에 적합하도록 改正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內容은 官署當經費로 消耗品을 買入, 修理, 製造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資產取得費로 備品을 購買할 때와 같이 經理官에게 買入 要求토록 하여 物品購買 節次를 一元化하였으며, 不用品賣却時 때 物品當 取得價格이 500萬원 이상으로 再活用이 가능한 物品만 鑑定評價 하던 것을 取得價格 1,000

萬원 이상인 物品으로 上向調整하였고, 物品出納員의 帳簿中 消耗品 臺帳을 除外시켜 法定帳簿를 축소함으로써 行政節次의 간소화를 도모하는 한편, 耐用年數가 1年 미만이라도 取得單價가 5萬원 이상인 物品은 備品으로 간주하던 것을 그간 物價上昇에 따른 高價의 소모성 物品이 많은 점을 감안해서 10萬원 이상의 物品으로 上向調整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改正業은 94年度 定期 財物調査 結果 발견된 그간의 불합리한 事項을 합리적으로 調整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內容은 配付해 드린 改正條例案을 參考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議案番號 第1189號인 서울特別市稅減免條例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서울特別市稅의 課稅免除 및 불균일 課稅에 관한 條例 25個中 17個 條例의 適用 時限이 1994年 12月 31日로 滿了됨에 따라 國家有功者, 社會福祉, 交通, 住宅建設 및 教育 등 政策目的上 稅制支援이 필요한 分野의 23個 條例는 계속 存置하되, 條例運營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를 統合하여 단일 減免條例로 制定하고, 政策目的이 달성된 條例 2個는 廢止하고자 합니다.

단일 條例制定에 따라 既存 條例 25個는 모두 廢止하여야 하는바, 適用 時限이 금년말로 되어 있는 17個 條例는 時期가 도래하면 自動 廢止됩니다만, 指定文化財에 대한 減免條例外 7個 條例는 適用 時限이 무기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本 條例附則에서 廢止토록 했습니다.

현행 減免條例와 그 內容이 달라지는 것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째, 障礙人所有 乘用車에 대한 自動車稅 減免對象 障礙人을 1級내지 3級 肢體障礙人에서 1級 내지 4級 視覺障礙人

도 포함하고, 당해 障礙人이 運轉免許證이 있어야만 課稅免除 하던 것을 運轉免許證이 없더라도 課稅免除하도록 하며, 減免對象 乘用車를 1,500cc에서 2,000cc로 하였습니다.

둘째, 宗教團體 醫療業에 대한 市稅를 100% 免除에서 50% 減免으로 減免幅을 줄였으며 세째, 文化財保存 支援을 위해 指定文化財에 대한 都市計劃稅를 50% 減免에서 課稅免除로 轉換하였고 네번째, 駐車用土地의 경우 免除對象을 駐車營業 收入 金額이 당해 駐車場土地 公示地價의 7/100이상 되는 경우에 한하여 市稅를 減免해 주었으나, 이번 減免條例에서는 당해 駐車場의 土地 公示地價와 附帶施設의 課稅時價標準 合計類의 3/100 이상으로 하여 그 基準을 완화하였습니다.

그리고 免除對象이 없는 새마을事業에 대한 減免條例와 建築實績이 미미한 太陽熱煖房住宅에 대한 減免條例는 廢止하였습니다.

기타 減免對象과 減免稅目은 현행과 같으며 配付하여 드린 市稅減免條例案 및 同 條例案을 요약한 油印物을 參考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議案番號 1181號인 서울特別市統合公課金課徵事業및 特別會計設置條例廢止條例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 韓電, KBS등 關係機關과 서울特別市가 協約을 締結 6 個 公課金を 統合하여 管理해 왔습니다만, 1994年 10月 1日 부터는 統合公課金を 分離한다는 政府方針이 確定되어 內務部의 統合公課全細部公認指針에 따라 個別公課金 運營 주체 별로 業務를 分離하였으며, 制度分離 後에도 一定期間 계속되는 特別會計 精算業務 殘餘業務를 1994年 12月 26日까지 최종 終結하고 이를 廢止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議案番號 第1190號인 서울特別市公有財産管理條例中

改正條例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地方財政法施行令이 公有財産 賣却代金の 分割 納付時 그 期間 및 利率을 5年 이내 年 5% 내지 2割에서 10年 이내 5%에서 8%의 범위내에서 條例로 정하도록 改正됨에 따라 分割 納付의 對象別 納付期間 및 利率을 정하는 것으로써, 公有財産의 賣却代金を 10年 이내에 年 5%의 利率을 붙여 分割 賣却토록 하는 경우와 10年 이내 8% 경우 그리고 5年 이내 8%의 경우로 大別하였습니다.

먼저 10年 이내 年 5%의 경우는 公共性이 강한 경우로서 公用 또는 公共用으로 使用할 財産을 自治區에 賣却할 때와 學校用地로 使用할 財産을 教育廳에 賣却했을 때 適用하고, 또 市나 自治區에서 推進하려는 再開發事業促進 및 支援次元에서 住宅改良再開發 區域안에 있는 土地를 再開發事業 施行 認可 당시의 建物所有者에게 賣却할 때도 適用토록 했습니다.

또 10年 이내에 年 8%의 利率을 붙여 分割 賣却토록 하는 경우는 市有地를 長期間 占有하고 있는 無許可建物 所有者들이 대부분 零細民이어서 代金納付 능력이 不足하다는 점을 고려해서 81年 4月 30日 이전 占有 또는 特定建築物整理에 關한特別措置法에 의해서 양성화된 建物 占有地로 200m² 이하 또는 建物 바닥面積의 2倍 이내 土地를 賣却할 때 適用토록 하고, 國家나 地方自治團體의 公共事業으로 發生한 撤去民에게 住居用으로 市有地를 賣却하거나, 地方自治團體가 建立한 아파트 등을 國家報勳處長이 指定하는 國家有功者에게 賣却時에도 公共事業의 원활한 推進과 國家有功者에 대한 優待次元에서 長期 分割 納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5年 이내에 年 8%의 利率을 붙여 分割 賣却토록 하는 경우는 일시에 全額 納付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기타 事項으로,

國家에게 賣却할 때, 기타 公益事業支援用 賣却財産으로 일시 全額納付가 곤란하다고 市長이 인정하는 財産을 賣却할 때 適用토록 規定했습니다.

기타 상세한 內容은 油印物을 參照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議案番號 第1177號인 '94市有財産管理計劃下半期變更(追加)2次計劃同意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4市有財産管理計劃下半期變更(追加)2次計劃同意案에 計上된 財産은 交換에 따른 取得과 處分 各 1件으로서, 이는 國家와 地方自治團體間 相互 占有財産 交換의 一環으로 大統領 警護室에서 駐車場으로 占有 使用하고 있는 市有地 2,358㎡와, 우리 市가 무궁화동산 造成敷地로 使用하고 있는 國有地 1,775㎡를 相互 交換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議案番號 1176號인 '95市有財産管理 計劃同意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5市有財産管理計劃同意案에 計上된 財産은 總 56件으로서 土地買入 및 建物 新·增·改築에 의한 取得 23件, 賣却 32件, 無償使用許可 1件입니다.

먼저 取得對象 財産을 말씀드리면, 土地取得 3筆地 1,980㎡는 新道林, 驛村, 傍花 등 3個 消防派出所 建立을 위하여 敷地를 買入하려는 것이며, 建物 取得 20棟 24,920.5㎡는 消防派出所 新·增築 9個所 4,404 m², 松坡社會體育센터 新築 7,370㎡, 市立北部障礙人福祉館 및 市立更生院療養棟 新·改築 7,660㎡, 障礙人綜合福祉館治療室 및 市立火葬場納骨堂 增築 1,310㎡와 서울市保健環境研究院 研究棟 增築 2,805㎡ 및 中小企業育成支援을 위한 保育센터 1,372㎡를 增築 取得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賣却對象 財産은 32件에 44筆地 17,729.4㎡로서,

사유를 말씀드리면 鍾路區 杏村洞 171-178 1筆地 272.7㎡는 대신고교내에 소재하고 있어 현재 占有者인 대신고교에 賣却하고, 中浪區 面牧洞 378-12 1筆地 1,752.7㎡는 法院行政處에 中浪登記所 新築敷地로, 그리고 松坡區 風納洞 330-24 1筆地 1,002㎡는 松坡區廳의 再活用品 收集所 敷地로, 西大門區 北阿峴洞 210-4 外 4筆地 2,637.5㎡는 北阿峴洞 市民아파트 再建築組合에, 그리고 道峰區 彌阿洞 山 35-36 1筆地 6,241㎡는 彌阿아파트 再建築組合에, 盧原區 上溪洞 197-1 1筆地 396㎡는 國民住宅事業 施行者인 코오롱建設에, 종로구 창신동 222-8 6筆地 3,736㎡는 鍾路區 區民會館 建立敷地로, 기타 小規模 土地는 인접주 등에게 각각 賣却하려는 것입니다.

세째로, 無償使用 許可對象 財産 1件은 종로구 도림동 95-1 垜地 1,142㎡와 建物 1,075㎡를 서울地方警察廳에 交通巡察隊 駐車場과 事務室로 無償 대부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特別市物品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을 비롯한 6件的 上程案件에 대한 提案說明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聲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의 檢討報告를 듣겠습니다.

○專門委員 安錫洙; 專門委員이 報告 올리겠습니다.

서울特別市物品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 檢討結果를 報告드리겠습니다. 報告書 2쪽이 되겠습니다.

서울特別市物品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의 主要內容은 官署當 經費로 物品을 買入, 修理, 製造코자 하는 경우에도 物品出納員을 經유한 후 經理官에게 買入要求토록 하고, 不用品賣却時 鑑定評價 對象物을 取得價格 500萬원 이상 物品에서 1,000

萬원 이상으로 上向調整하며, 物品出納員의 帳簿 中 消耗品臺帳을 제외 및 耐用年數가 1年 미만이라도 取得單價가 5萬원 이상인 物品은 備品으로 간주하던 것을 取得單價 10萬원 이상으로 上向調整하는 것입니다.

官署當經費로 物品을 買入, 修理, 製造코자 하는 경우에도 物品出納員을 경유한 후 經理官에게 買入要求하는 것은 物品購買 節次를 一元化하는 次元에서 별도 問題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不用品賣却時 鑑定評價 對象物을 取得價格 500萬원 이상인 物品에서 1,000萬원 이상으로 上向調整하고, 耐用年數가 1年 未滿인 物品이라도 取得單價가 5萬원 이상인 物品은 備品으로 간주하던 것을 10萬원 이상의 物品으로 上向調整한 것은 그간의 物價上昇을 감안하고 行政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次元에서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物品出納員이 備置하고 整理하여야 하는 帳簿 즉, 物品收入 및 出給原帳, 備品出納 및 運用카드, 物品카드 登錄簿, 圖書臺帳, 消耗品臺帳 中에서 消耗品臺帳을 제외시키는 것은 消耗品の 성질상 消耗되거나 破損되기 쉽고 또한 그 數量도 많아 行政簡素化를 지향하는 次元에서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서울特別市稅減免條例案에 대한 檢討結果를 報告드리겠습니다.

報告書 8쪽이 되겠습니다.

서울特別市稅減免條例案은 現행 서울特別市稅의 課稅免除 및 不均一 課稅에 관한 條例의 適用時限이 대부분 1994年 12月 31日附로 滿了됨에 따라 現행 25個의 條例中 減免이 불필요한 條例는 時限延長을 하지 않고, 社會福祉, 交通, 住

宅, 建設 등 稅制支援이 계속 필요한 分野에 대하여는 단일 條例에 개별조문으로 規定하여 市稅減免코자 하는 것입니다.

현행 市稅減免條例와 비교해서 다른 점에 대해서 報告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행 市稅減免條例中 實際 廢止되는 條例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25個 市稅減免條例 中에서 실제 廢止되는 條例는 서울 特別市새마을 事業支援을 위한 市稅課稅免除條例와 서울特別市太陽熱煖房住宅에 대한 市稅課稅免除에 관한 條例입니다. 새마을事業에 대한 減免은 農村 새마을事業 關連으로 서울市는 免除對象이 없고, 太陽熱 煖房住宅은 거의 없으므로 市稅減免對象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별도 問題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減免範圍 調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障礙人乘用車에 대한 減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서울特別市障礙人用乘用車에 대한自動車稅課稅免除에 관한條例에서 障礙等級 1級 내지 3級障礙人을 對象으로 1,500cc이하 보철용 乘用車에 대하여 自動車稅를 免除하고 있으나, 단일 減免條例案에서는 障礙等級 1級 내지 3級の 肢體障礙人과 1級 내지 4級の 視覺障礙人이 보철용 또는 生業活動用으로 2,000cc 이하 乘用車를 所有하는 경우에 自動車稅를 免除하도록 하여 減免對象者 範圍를 확대하고 車輛 排氣量도 上向調整하는 것입니다.

肢體障礙人 外에 視覺障礙人에게도 自動車稅를 減免하는 것은 障礙人福祉 擴大次元에서 별도 무리가 없다고 보며, 減免車輛의 排氣量을 1,500cc에서 2,000cc이하로 擴大한 것은 傷痍을 입은 國家有功者의 경우 2,000cc 이하의 보철용 乘用車

에 대하여 取得稅, 登錄稅 및 自動車稅를 免除하고 있으므로
형평상 별도 問題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宗教團體醫療業에 대한 減免에 대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현행 서울特別市宗教團體醫療業에 대한 市稅課稅免除에 관한
條例에서 宗教團體 醫療業에 使用되는 不動産에 대하여 取得
稅, 登錄稅, 都市計劃稅, 共同施設稅를 全額 免除하고 있으나
서울特別市稅減免條例案에서는 50% 減免하고자 하는 것입니
다.

減免幅을 下向調整하고자 하는 것은 市 財政 擴充 次元에서
바람직하나 현재 서울市管內에서 減免對象이 되는 宗教團體
醫療機關은 없습니다.

指定文化財에 대한 減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서울特別市指定文化財에 대한市稅不均一課稅에 관한特別
條例에서 指定文化財에 대하여 都市計劃稅 50% 減免하고 있
으나 市稅減免條例案에서는 全額 免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市稅減免幅을 擴大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여겨지나 郷土文化財를 保存하는 次元에서 理解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駐車場에 대한 減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서울特別市駐車場에 대한市稅課稅免除에 관한條例에서
減免對象 駐車場은 1年間 駐車場 收入金額이 당해 土地公示
地價의 7/100 이상인 경우로 하고 있으나, 市稅減免條例案에
서는 駐車場の 土地公示地價와 附帶施設의 課稅時價標準 合
計額의 3/100이상인 경우로 下向調整하는 것입니다. 변두리
地域에서 실제 年間 駐車場收入이 土地公示地價의 7/100이
상 되기는 쉽지 않으므로 실제 駐車場을 運營하면 市稅減免
을 받을 수 있도록 基準을 다소 下向調整하는 것은 별도 問

題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외에 현행 25個 市稅減免條例를 단일 減免條例로 統合하는 것은 條例運營의 효율성을 提高시키는 次元에서 타당하다고 여겨집니다.

서울特別市統合公課金課徵事業및特別會計設置條例廢止條例案에 대해 檢討結果를 報告드리겠습니다.

서울特別市統合公課金課徵事業및特別會計設置條例廢止條例案은 1994年 10月 1日부터 統合公課金を 分離 施行하고 있으며, 94年 12月 26日까지는 特別會計 精算業務가 完了되므로 이 條例를 廢止하려는 것입니다.

94年 10月 1日부터 統合公課金 分離施行으로 統合公課金課徵事業 및 特別會計는 事實상 廢止되었으며, 廢止에 따른 統合公課金課徵事業特別會計에 대한 追加更正豫算案에 대하여도 議會에서 承認하였기에 서울特別市統合公課金課徵事業特別會計設置條例를 廢止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서울特別市公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해 檢討結果를 報告드리겠습니다. 報告書 4쪽이 되겠습니다.

서울特別市公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은 地方財政法施行令 改正에 따라 公有財産을 分割賣却時 10年 이내 分納 利子率 年 5%, 10年 이내 分納 利子率 年 8%, 5年 이내 分納 利子率 年 8%인 세 가지 경우로 規定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0年 이내 分納 利子率 年 5%의 事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접 公用 또는 公共用 그리고 學校用地로 使用할 財産을 自治區와 教育廳에 10年 이내 分納 利子率 2年 5% 條件으로 賣却하는 것은 公共性이 강한 경우로서 별도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住宅改良再開發區域內的 占有 使用되고 있는 土

地를 再開發事業 施行認可 당시의 建物所有者에게 상기 條件으로의 分割賣却은 市 및 自治區에서 推進하려는 再開發事業을 보다 促進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10年 이내 分納 利子率 年 8% 事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0年 이내 分納 利子率 年 8%의 分割賣却 對象範圍는 81年 4月 30日 이전 占有 또는 特定建築物整理에 관한 特別指置法에 의해 陽性화된 建物占有地로 200m² 이하 또는 建物 바닥面積의 2倍 이내 土地를 賣却할 때와 國家나 地方自治團體의 公共事業으로 發生한 撤去民에게 住居用으로 賣却 및 地方自治團體가 建立한 共同住宅 및 敷地를 國家報勳處長이 指定하는 國家有功者에게 賣却할 경우 등입니다. 市有地를 長期間 無償 占有하고 있는 經濟적으로 어려운 住民에게 市有地 分割賣却 條件을 완화하는 것은 市有地の 효율적인 賣却 方法으로도 理解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5年 이내 分納・利子率 年 8%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5年 이내 分納 利子率 年 8% 新規로 分割賣却이 가능한 것으로 追加된 것은 國家에 賣却할 경우입니다. 이는 國家에서 地方自治團體에 賣却할 경우와 같은 條件으로 相互主義原則에 입각하여 타당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改正條例案에서는 現行 條例보다 分割賣却範圍, 期間 및 利子率 등에서 細分化・多樣化하여 分割賣却 條件을 대폭 완화함에 따라 自治區 教育廳 賣却對象 住民들의 便益 增進에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 여겨집니다. 다만, 分割賣却 對象條件이 3種類로 差等化되어 分割賣却 對象者 中에는 상대적 불이익의 問題點을 提起하거나 分納對象에 該當되지 않은 階層 中에서 分割賣却 對象에 포함시켜줄 것을 要求하는 民願이 많 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94市有財産管理計劃下半期變更(追加)2次計劃同意案에 대한 檢討結果를 報告드리겠습니다.

市有財産의 取得, 管理 및 處分을 위하여는 地方財政法 第77條에 의거 市長이 市有財産管理計劃을 樹立하여 市議會의 議決을 얻도록 되어 있고, 市有財産管理計劃을 變更하는 경우에도 서울特別市公有財産管理條例 第37條에 의하여 議會의 同意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서울特別市長이 提出한 '94市有財産管理計劃下半期變更(追加)2次計劃同意案에 計上된 財産은 取得 1件 土地 13筆地 1,775.36㎡, 處分 1件 土地 1筆地 2,358㎡입니다. 이는 무궁화동산 造成敷地인 國有地 1,775.36㎡와 大統領警護室에서 駐車場으로 占有使用하고 있는 市有地 2,358㎡를 相互 交換하기 위한 것입니다.

地方財政法施行令 第101條에 의하여 國家와 地方自治團體間에는 土地, 建物이나 土地의 定着物을 公用또는 公共用으로 使用하고자 할 때에는 相互 交換할 수 있으므로 法上 瑕疵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95市有財産管理計劃同意案에 대한 檢討結果를 報告드리겠습니다.

市有財産의 取得, 管理 및 處分을 위하여는 地方財政法 第77條 및 서울特別市公有財産管理條例 第37條第1項에 의거 서울特別市長이 市有財産管理計劃을 樹立하여 市議會의 議決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서울特別市長으로부터 同意 要請된 95年度 市有財産管理計劃 計上 財産은 取得 23件, 處分 32件, 無償使用 1件입니다.

取得할 財産은 土地 3筆地 1,980㎡, 建物 20棟 24,920.5㎡

로 土地는 신도림, 驛村, 傍花 消防派出所 建立敷地로 買入하는 것이며, 建物は 消防派出所 新・増築 9個所 4,404㎡, 松坡 社會體育센터 新築 7,370㎡, 市立北部障碍人福祉館 및 市立更生院療養棟 新・改築 7,660㎡, 障碍人綜合福祉館治療室 및 市立火葬場 納骨堂 増築 1,310㎡와 서울市保健環境研究院 研究棟 増築 2,805㎡ 및 中小企業育成支援을 위한 서울창업 보육센터 1,372㎡를 取得하는 것입니다.

賣却할 對象은 32件 土地 44筆地 17,729.4㎡로서 隨意契約 對象은 土地 39筆地 17,056.1㎡이며, 이는 地方財政法施行令 第95條第2項 各號 規定에 의거 國家, 地方自治團體, 隣接土地 所有者, 都市計劃事業施行者, 學校法人 등에게 隨意賣却이 可能하고, 殘餘分 賣却土地 5筆地 673.3㎡는 公開競爭賣却으로 별도 問題없다고 생각됩니다.

無償使用 許可對象 財産은 1件으로서 垜地 1,142㎡, 建物 1,075.2㎡를 서울地方警察廳에 交通巡察隊 駐車場과 事務室로 無償 대부하는 것입니다. 地方財政法 第88條第2項에 의하면 雜種財産은 國家 또는 他 地方自治團體가 직접 公用, 公共 用事業에 使用하는 경우에는 無償 貸付할 수 있으므로 法上 瑕疵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報告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聲九; 이상으로 提案說明과 檢討報告를 들었습니다.

案件을 효과적으로 處理하기 위하여 案件別로 分離하여 審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議事日程 第3項 서울特別市物品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을 審査하겠습니다.

同 案件에 대하여 質問하실 委員께서는 質疑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質疑하실 委員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議事日程 第3項에 대한 質疑 答辯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議事日程 第3項 서울特別市物品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을 서울特別市長이 提出한 原案대로 議決하고자 하는데 異議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異議 없으시면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議事棒 3打)

.....
(참조)

서울특별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뒤에 실음)

.....
○委員長 李聲九; 다음은 議事日程 第4項서울特別市稅減免條例案을 審査하겠습니다.

同 案件에 대해서 質疑하실 委員님께서서는 質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質疑하실 委員 없으시면 第4項에 대한 質疑 答辯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議事日程 第4項 서울特別市稅減免條例案을 서울特別市長이 提出한 原案대로 議決하고자 합니다. 異議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異議 없으시면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議事棒 3打)

.....
(참조)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안

(뒤에 실음)
.....

○委員長 李聲九; 다음은 議事日程 第5項 서울特別市統合公課金課徵事業및特別會計設置條例廢止條例案을 審査하겠습니다.

同 案件에 대하여 質問하실 委員께서는 質問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曹相彩 委員 質問해 주십시오.

○曹相彩 委員; 지금 오늘 案件에 대해서는 專門委員과 車幹事님, 또 아주 深度있게 檢討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異議 없는 것으로 이렇게 意見이 一致했으니까 委員長님, 一括 處理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지요, 6項 市有財産에 대해서도.....」 하는 委員 있음)

○委員長 李聲九; 기이 시작되었으니까 案件別로 따로 하겠습니다. 없는 것으로 미리 檢討했다면 일단..... 생략해 가면서 하겠습니다.

○曹相彩 委員; 市有財産이요?

(「네, 그것은 별도로 하시면 되잖아요」 하는 委員)

그럼 그것은 別途로 그렇게 하세요.

(「아니, 市有財産 通過에는 異議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第5項에 대해서 質疑하실 委員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質疑하실 委員이 안 계시면 議事日程 第5項 서울特別市統合公課金課徵事業및特別會計設置條例廢止條例案을 서울特

別市長이 提出한 原案대로 議決하고자 합니다.

異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異議 없으시면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議事棒 3打)

.....

(참조)

서울특별시통합공과금과징사업및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
안

(뒤에 실음)

.....

○委員長 李聲九; 다음은 議事日程 第6項 서울特別市公有財
產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을 審議하겠습니다.

同 案件에 대해서 質問하실 委員께서는 質問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金炳植 委員 質問해 주십시오.

○金炳植 委員; 金炳植 委員입니다.

연말도 가까와 오고 바쁘실 텐데 우리 常任委員會에 열심히
나와 주신 財務局 職員들에게 감사를 우선 드립니다.

이번에 公有財產管理條例改正案을 보면, 물론 市民들을 위해
서 많은 배려를 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하다가는 우리 市 財
產이나 國·公有地에 대한 財產이 너무 미흡하지 않나 걱정
도 되는 한편, 問題點이 發生되는 대목이 있습니다. 3等分 해
서 이번에 이것을 發表를 했는데 그 중에는 國家에서 장려하
고 있는 不良住宅再開發입니다. 거기에는 이 適用이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점을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民願을 해소하기 위해서 調整한 것은 참으로 잘됐다고 저는

생각하면서, 事業承認과 事業後에는 區分해서 물도록 했습니다. 그 점이 잘못 되었다고 전 指摘합니다. 왜냐면 몇 年前에는 投機者들의 성화에 많은 물의를 社會적으로 일으켰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인정을 할 수도 있으나 지금 2·3年前부터는 投機性을 가지고 社會에 물의를 일으키는 일은 전무하다고 봅니다. 근자에 와서는 더군다나 財産의 問題는 投機를 더 하지 못하고 있는 시점에서 事業承認 前과 後를 區分해서 이것이 策定이 된다면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것을 指摘을 합니다.

그 理由로는 그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住宅組合도 있고 또 再建築도 있습니다만 특히, 不良住宅再開發을 하면 國家에서 적극 장려해서 없는 사람들이 難民村으로써 2·30年씩 살다가 집 한 채 마련하겠다는 희망으로 짓고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그 아파트를 짓기를 기다리다가 5年, 10年씩 지나다 보니까 도저히 할 수 없어서 그냥 팔고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현실은 아무리 싸게 팔아도 살 사람이 없어요. 再開發地域에는. 그렇다 보면 집을 팔아서 나간 후에 다른 사람이 사서 오는데 그 사람들에게는 10年 分割이 되지 않고 5年으로 묶어서 年 8% 그것도 이렇게 適用 한다면 더욱 심화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해서 이런 점은 동일하게 10年 分割에 年 5% 適用을 해 줘야만 된다고 本委員은 주장을 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理由는 충분히 됩니다. 물론 그 동안에 投機를 抑制하기 위해서 事業承認 후에 명단을 提出하거나 집을 사고 판 사람은 혜택을 주지 않는다는 그 대목에는 理解는 가나 현 시점에는 그렇지 않다 그렇게 보고, 또 事業承認이 난 후에 買入을 하는 사람들을 대체로 보면

집을 한 칸 마련하려고 그것도 기약도 없이 몇 年을 기다려야 집 한 칸을 마련하는 再開發에 投資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또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동일하게 해주었으면 하는 것이 本委員의 말입니다. 그래서 事業承認 前과 後의 問題를 동일하게 再開發地域에만 좀 適用을 해줬으면 바라고, 이 問題를 保留를 要請을 하겠습니다. 是正이 되도록 좀 부탁을 드립니다.

아울러 말씀드리자면 다른 案件에 대해서는 대체로 다 잘 되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不良住宅再開發에 대해서는 그 區分을 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10年 分割에 年 5%로 해놓고 事業承認 後者는 5年 分割에 年 8%로 한 適用은 잘못된 適用이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答辯을 局長님이 좀 해 주시고.....

○委員長 李聲九; 그럼 일단 財務局長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局長 孫長鎬; 이 問題에 대해서 財務局長 答辯하겠습니다.

물론 再開發地域內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 또 事業施行 認可 前後를 同一하게 해서 事業을 활성화시키자는 金 委員님의 衷情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원래 이 法 趣旨가 再開發事業 認可 當時에 현재 있는 분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고, 認可 後에 時間이 經過함에 따라서 새로이 사서 轉入되는 분에게는 혜택을 주지 않는 것이 이 法 趣旨입니다.

이 趣旨는 金 委員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종래에 投機性, 소위 買入者가 많은 사례가 이 制度의 根本原因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물론 金 委員님 말씀대로 지금 投機는 사라졌다고

할지언정 앞으로 投機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래서 法은 事案이 있을 때마다 자꾸 改正할 수도 없는 형편이니까 일단 원래 趣旨는 살리고 그 다음에 豫防的 次元에서도 이와 같은 것은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參考해 주실 것은 원래 根本 趣旨에 의한다면 買入者에게는 혜택을 전혀 안 줘야 옳지요, 投機者라면. 전혀 안 주고 당초에 居住하던 再開發事業 施行認可 當時의 居住者에게는 혜택을 주고, 그 외에 轉入者에게는 안 주는 것이 原則이지만 그래도 金委員님 말씀대로 그 地域 활성화를 위해서 다소 5年 내지 8%의 혜택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안 주는 것이 아니고 일부는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趣旨가 國有財産管理法에도 이와 같은 동일한 趣旨로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市有財産뿐만 아니라 國有財産도 이와 같이 認可 當時의 사람에게 혜택을 주고 그 이후에는 혜택을 안 주는 것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5年 내지 8%로 이것을 다소간의 혜택을 드리는 그런 셈이 되겠습니다.

물론 모든 분에게 더 많은 減免 혜택은 줘야 되겠지만 法 規定의 豫測性和 소위 경직성을 다소 우리가 고려했을 때 이와 같은 制度는 不可避하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答辯을 마치겠습니다.

○金炳植 委員; 지금 本委員이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지금 현재 이 問題를 가지고 民願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지금 再開發을 계속 하는 데와 지금 認可를 받는 사람은 問題가 될 것이 없습니다. 자기들이 감안해서 해야 되는데, 기이 5年前에, 3年前에 작년에 사 놓은 사람들이 問題가 되는 것

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만이라도 救濟하는 方法을 附則이라도 넣어 주셔야 됩니다. 지금 局長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法的인 問題를 앞으로 防止하기 위해서 꼭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면 지금 우리가 條例改正한 날까지를 정해주시든가 이렇게 해 주셔야만 됩니다. 지금 우리 서울에서만도 160餘 군데가 再開發을 하고 있습니다. 事業承認이 나고 있는 데만 해도 숫자가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集團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한 組에 보통 500名에서 700名, 1,000名 이상 되는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여기 이 점에 해당되는 사람만도 1/3정도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요즘에 산 것이 아니고 몇 年前에 사 놓은 것을, 지금 事業承認은 그 전에 났고 이래서 이런 사람들이 結果적으로 民願만 야기시키는 결과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本委員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財務局長 孫長鎬; 걱정하시는 內容은 알겠습니다만 이미 이분들에게도 이 條例案에 의해서라도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金炳植 委員; 다소는 받습니다만, 그래도 사람이라는 것은 없는 사람은, 있는 사람도 그렇지만, 단 100원 가지고도 따집니다.

○財務局長 孫長鎬;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社會 正義的인 입장에서 고려를 해야 되겠습니다. 當初 再開發施行 當時의 居住者는 우리가 再開發하겠다는 그런 組會員하고 外部에서 사서 들어오는 것하고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社會的 감정상이라도. 그러니까 이것을 區分해 줘야지 전혀 똑같다 이렇게 하기에는 우리가 法 감정에 비추어서도 좀 問題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金炳植 委員; 局長님 말씀을 제가 理解를 못해서 말씀을 자꾸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狀況이 再開發組를 국한해서 해 달라는 얘기를 꼭 했습니다. 지금 再開發地域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하면 遲滯辨償金이라는 것을 要求를 또 하고 있지요, 몇 年前서부터. 그것을 또 賦課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 問題點이 발단되고 있는 것은 事業認可日로부터 遲滯辨償金을 물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撤去를 하지 못하는 그 再開發 地域의 어려운 면이 2년도 가고 5년도 갑니다. 그러면 집을 짓기 싫어서, 땅을 사기 싫어서 안 산 것이 아닙니다. 撤去를 해야만 집을 짓게 되는데 撤去하는 過程이 이렇게 많은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遲滯辨償金이라는 그것이 엄청나게 賦課가 되어서 再開發을 하고 집을 한 칸 마련하겠다는 그 難民들은 아예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될 경우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撤去를 선불리 시작했어요, 시작한 사람이 協助하는 마음에서 먼저 撤去를 해서 傳貫로 빠져나갑니다. 이것이 撤去하는 過程이 1년에 다 끝나지 않고 3年, 5년이 걸립니다, 제일 나중까지 하다보면. 그러면 專貫로 나갔던 사람이 사글세에서 아예 자기집 權限인 딱지라는 일명의 權限을 팔아서 生計維持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아파트를 지으려고 했던 그 組合員이 貫入者가 되어 버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런 경우를 볼 때 遲滯辨償金도 事業承認 날로부터 하는 것이 아니고 着工日로부터 해 주셔야 됩니다. 이 점도 고려해 주셔야 되고,

지난 번 常任委員會할 때 제가 發言했던 얘기입니다만, 현재 局長님이 이제 오셔서 처음 듣는 말씀일 것입니다만, 이것도 調整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 극한에서 再開發地域은 이런 혜택을 주지 않으면 도저히 해 나갈 수 없고 그 어려운 사람들이 집 갖는다는 희망이 좌절되고 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하기 때문에 本委員이 이 말을 꼭 指摘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再開發에 관여도 하지 않고, 옛날에.....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聯合會 顧問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애로사항을 제가 잘 듣고 지금 代辯하고 있고 실제 住民들의 애로사항을 저희가 눈으로 보고 듣고 資料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오늘 제가 얘기한 5年 年 8%를 같이 同等하게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遲滯辨償金도 着工後에 이렇게 하도록 財務局에서 하셔야 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財務局長 孫長鎬; 遲滯辨償金 問題는 이 問題와 약간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제가 研究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問題에 대해서는 저희들 입장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最初者와 轉入者는 아무래도 우리가 社會的 感情이나 法 感情에서 다소 차이를 뒤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것이 저희들의 생각이고, 앞으로 만약에 그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만, 投機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을 法은 豫測도 할 필요도 있지요.

○金炳植 委員; 아니,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投機가 났을 때 適用을 해도 늦지 않지요. 지금 本委員이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우리 政府에서 하고 있는 政治가 投機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앞으로 받을 붙일 수가 없다고 저는 단정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여기에 따른 組員들이 지금 현재 民願이 發生할 소지가 다분히 있고 저에게도 자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代辯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습니다. 동

요가 되고 있어요. 지금 한 組에 보통 200名에서 많은 데는 4·500名까지도 있는데 제 나름대로 調査를 해 보니까 거의가 집이 없어서 사는 사람들만 있습니다. 投機의 目的으로 사 놓고 지금까지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다 팔아 먹고 나갔어요. 안 되고, 지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가 자기네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財務局長 孫長鎬; 만약에 집 없는 사람이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사는 경우라면 再開發地域이나 再開發地域 아닌 地域에 同一하게 取扱 받아야 되겠지요. 再開發地域이 아닌 데는 전혀 혜택을 못 받거든요. 그래서 再開發地域 안은 그래도 再開發 區域 自體의 활성화로 해서 다소의 減免 혜택을 附與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을 理解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委員長님!」 하는 委員 있음)

○金炳植 委員; 가만 있어요, 아직요, 한 마디만 더 할게요. 물론 財務經濟委員會를 하다보니까 때로는 稅金을 왜 못 거두어들이느냐고, 적게 걷는다고 해서 꾸짖을 때도 혹시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얘기하는 것은 條例로 정해져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물의가 나지 않고 혜택을 보자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점을 감안해서 일을 處理했으면 하는 것이 本委員의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財務局長 孫長鎬; 內容은 理解를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聲九; 廉東秀 委員 말씀해 주시지요.

○廉東秀 委員; 廉東秀 委員입니다

本委員은 執行部의 原案을 同意하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

이 條例라고 하는 것은 우리 千百萬 市民이 公평하게 혜택을 받아야 좋은 條例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金炳植委員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을 조금도 否認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 저도 同感을 합니다만, 지금 金炳植委員님의 말씀은 전부다 좋게만 생각을 하시는데, 本委員은 지금 서울市의 再開發區域이 上溪洞 뿐 아니라 곳곳에 널리 많이 再開發이 지금 속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 投機가 없다는 것은, 金炳植委員님 地域은 그런지는 몰라도 本委員이 느껴 본 바에 의하면 이 再開發地域에 投機가 없다고 누가 단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지금 이 만큼 혜택 준 것만 해도 저는 다행이 아닌가, 왜 投機가 벌어지느냐 하면 물론 어려운 庶民層이 사는데, 참 열심히 노력하면서도 때를 잘못 만나서 집 한 칸 못 마련한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地域에는 無爲徒食하는 者가 끼어들게 마련입니다. 그 無爲徒食者가 몇 % 되지는 않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어디선가 再開發한다면 끼어들어서 꼭 말썽을 일으키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혜택은 정말 實需要者가 못보고 엉뚱하게도 無爲徒食하는 者만 혜택을 보고, 또 다른 데로 도망가는 이러한 일이 많기 때문에 저는 이 執行部의 原案을 同意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聲九; 그러면 金炳植 委員님은 修正動議를 하자는 얘기입니까?

○金炳植 委員; 네, 그렇습니다.

○委員長 李聲九; 그럼 이렇게 處理를 하겠습니다.

金炳植委員의 再開發 區域안에 있는 土地를 再開發施行 認可 당시와 그 후에 同一하게 10年 分割 年 5%利子로 하자는 修正動議案이 提案되었습니다.

再請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金委員님, 이 問題는 다음에 좀더 研究하셔서 새로 한 번 다루시기로 하고, 일단 오늘은 再請이 없으므로 일단 議題로 成立이 안 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金炳植 委員; 좋습니다. 多數可決의 原則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저는 市民들을 代辯했을 뿐이지 제가 여기서 혼자 이길 수 있습니까?

○委員長 李聲九; 더 質問하실 委員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質問하실 委員님이 안 계시면 第6項에 대한 質疑 答辯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議事日程 第6項 서울特別市公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 條例案을 서울特別市長이 提出한 原案대로 議決하고자 하는데 異議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異議 없으시면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議事棒 3打)

.....
(참조)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뒤에 실음)

○委員長 李聲九; 다음은 議事日程 第7項 '94市有財産管理計劃下半期變更(追加)2次計劃向意案에 대해서 審査하겠습니다.

同案件에 대해서 質疑하실 委員님께서는 質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鄭興鎭 委員 質問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鄭興鎭 委員; 鄭興鎭입니다.

國家와 地方自治團體 間 相互 占有財産 交換 一環으로 國有地와 市有地를 交換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자칫 잘못하면 곧 있을 民選 基礎自治團體長과 廣域團體長이 그 地方 財産을 쉽사리 잘못 處理할 수 있다는 이 우려에서 몇 가지를 質問하고자 합니다.

大統領警護室에서 駐車場으로 점유 使用하고 있는 市有地 718坪과 우리 市가 무궁화동산 造成敷地로 使用하고 있는 國有地 517坪을 相互 交換하는 것인데 이것이 지금 200坪 差異가 있지요?

○財務局長 孫長鎬; 네, 그렇습니다.

○鄭興鎭 委員; 그럼 價格差異가 상당히 많이 날텐데.....

○財務局長 孫長鎬; 價格은 鑑定해서 精算을 합니다.

○鄭興鎭 委員; 差額을.....

○財務局長 孫長鎬; 差額을 精算합니다.

○鄭興鎭 委員; 그럼 당연히 해야지요. 그것을 報告해 주시기 바랍니다, 差額이 얼마인가.

○財務局長 孫長鎬; 이것은 承認이 난 연후에 저희가 鑑定節次를 밟습니다. 밟으면 그 때가서 報告를 드리겠습니다.

○鄭興鎭 委員;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局長 孫長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鄭興鎭 委員; 다음은 대신고등학교 안에 소재하고 있는 82

坪을 占有者인 대신고등학교에 賣却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동안에 占用料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財務局長 孫長鎬; 이것은 議案이 좀 다릅니다만, 占用料 賦課를 다 하고 있습니다.

○鄭興鎭 委員;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財産管理課長 權赫模; 그 資料는 안 가지고 있는데요, 賦課하고 徵收를 다 했습니다. 別途로 報告해 드리겠습니다.

○鄭興鎭 委員; 별도로 報告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無償使用 許可對象이 1件인데 鍾路區 도림동95-1 垆地345坪, 建物325坪을 서울地方警察廳에 무상대부하려는 건인데 이것이 소위 말하자면 금싸라기 땅입니다. 그리고 아까 冒頭에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地方..... 鍾路區에서 이것을 決定해야 할 問題입니다.

그런데 지금 地方財政法 第88條第2項에 의해서 雜種財産은 國家 또는 他 地方自治團體가 직접 公用, 公共事業에 使用하는 경우에 무상대부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法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이렇게 서둘러서 하는 理由는 장차 各 地方自治團體가 自立度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그 금싸라기 땅을 훌륭히 活用할 수 있는 데를 불구하고 지금 서둘러서 이렇게 無償으로 決定하려는 理由가 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아서 하십시오, 委員長님이 許諾하신다면.

○財務局長 孫長鎬; 아시는 바와 같이 이 땅은 交通放送局이 있는 땅입니다. 世宗文化會館옆의 땅인데 옛날부터 交通機動隊가 使用하고 있는 땅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市有地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이렇게 承認을 얻고 正식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委員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소위 國·公有財産이 형클어져서 서로 占有하고, 많이 지금 占有하고 있는 사례

들이 많아서 지금 차츰차츰 整理段階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國家것은 받을 것은 받고 우리가 줄 것은 주고, 아까 交換도 마찬가지로입니다만 차츰 차츰 整理段階에 가는 過程에 있기 때문에 이것도 어차피 우리 서울시 交通을 해결하는 交通巡察隊가 占有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無償使用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書類上 맞춰 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전부.

○鄭興鎭 委員; 아니, 그렇지 않지요. 우리가 아직 地方警察이라고 하지만 國立警察이나 다름없어요. 아직 地方警察로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지만 우리 서울시에서 막대한 豫算도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럼 공은 공이고 나는 私지 어떻게 이것을 無償으로 決定을 내려서 鍾路區의 收益을 없애버리려고 합니까?

○財務局長 孫長鎬; 이것은 鍾路의 收益이 아닙니다. 서울시.....

○鄭興鎭 委員; 아니, 鍾路로 되지요, 내년이면.

○財務局長 孫長鎬;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鄭興鎭 委員; 왜요?

○財務局長 孫長鎬; 이 市有財産은 서울시 것입니다.

○鄭興鎭 委員; 이제 앞으로 각 地方自治團體가.....

○財務局長 孫長鎬; 區와 市는 이미 財産 분리되었습니다.

○鄭興鎭 委員; 財産이 분리되었어요?

○財務局長 孫長鎬; 네, 이미 되어 있습니다.

○鄭興鎭 委員; 그래도.....

○財務局長 孫長鎬; 내년에는 區로 가고 그게 아니고요.....

○鄭興鎭 委員; 區議會에서나 地方自治團體長이 이것을 主張하게 될 것입니다.

○財務局長 孫長鎬; 아닙니다. 이것은 만약에 區 財産이라면

당연히 區議會에서 處理해야지요. 이것은 市 財産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서울市에서 이것을 處理하고 있습니다. 區財産과.....

○鄭興鎭 委員;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財務局長 孫長鎬; 그렇습니다.

○鄭興鎭 委員; 地方政府에서 이것을 원하면 어떻게 됩니까?

○財務局長 孫長鎬; 아니, 區有財産과 市有財産은 엄격히 다르고요. 만약에.....

○鄭興鎭 委員; 알아듣겠습니다만, 이제 地方政府에서 격렬한 抗議가 곳곳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地方自立度を 위해서. 그래서 자기 區에서 소지하고 있는 것은 거의 地方政府에 그것을 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서 쉽사리 우리 서울市에서 無償으로 이렇게 대여해 준다는 것은 생각해 볼 問題가 아닌가, 그리고 우리가 지금 地方警察廳에 충분한 豫算을 주고 있는데 어느 特定團體에 대해서는 無償으로 주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아까도 局長님이 指摘하셨지만 萬民이 法 앞에 平等하다고 이런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公共團體라 할지라도 주고받는 것은 명확히 해야 되지 않는가?

○財務局長 孫長鎬; 우선 먼저 한 가지는 區有財産과 市有財産은 이미 區分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問題에 대해서 市有財産을 왜 無償으로 警察廳에 빌려주느냐 하는 問題가 지금 방금 提起되는 問題입니다. 그러나 公共用으로 使用할 때에는 또 無償으로 해줄 수 있고, 또,.....

○鄭興鎭 委員; 지금 局長님도 잘 아시다시피 宗教團體 醫療行爲에 대해서 100% 減免에서 50% 올렸지요?

○財務局長 孫長鎬; 네, 그렇습니다.

○鄭興鎮 委員; 그것도 누가 말하기 어렵지만 이것이 原則적으로 옳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100% 다 받아야 돼요, 宗教團體도. 충분한 收益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公共으로 한다 하더라도 엄연히 税金은 주고받아야 한다 이런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財務局長 孫長鎬; 이상적으로 말씀하시면 모든 것이 有償으로 딱 매듭지었으면 좋다는 鄭委員님 생각은 理解가 가고 또 타당합니다. 그러나 또 無償使用케 하는 法的 根據도 있고, 또 使用하는 機關의 形態나 役割이 역시 우리 서울市를 위한 行爲이기 때문에 이 部分에 대해서는 큰 問題가 없을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鄭興鎮 委員; 어려운 問題는 제가 專門知識이 없어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많은 抵抗에 부딪치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예를 들면 鍾路區는 수많은 文化財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文化財管理委員會에서 그런 것을 전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鍾路區의 自立度를 위해서 鍾路住民들이나 議會나 그 團體에서 그것을 國家에게, 文化財管理委員會에 그것을 뺏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것이 原則이 될 것입니다. 그래야만 財政自立度가 제대로 되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市에서 특히, 될 수 있는 대로 市有地라 하더라도 함부로 無償이다 또 감면해 준다 이런 問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한다 이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國家有功團體라든가, 前職 大統領에 대해서도 지금 상당히 問題가 많습니다. 이런 데서 우리가 너무나 조급하게 이것을 決定지어서 非難을 받을 소지는 피해가야 한다 이런 意味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財務局長 孫長鎬; 앞으로 參考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딱 하나만 제가 물어보지요」 하는 委員 있음)

○委員長 李聲九; 金瓚會 委員.

○金瓚會 委員; 지금 鄭興鎭 委員이 얘기한, 交通放送局에서 쓰고 있지요, 巡察隊關係. 그 垡地는 제가 알기로는 애당초 世宗文化會館 空地로 活用하도록 되어 있는 것인데 위에서 갑자기, 결국은 警護하는 그런 施設이 너무 外廓에 있기 때문에, 사실 出動하는데 지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일부 할애해서 썼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갑자기 이것을 市에서 할애해서 建物を 지었거든요. 그 用地만은 世宗文化會館의 附屬用地로 그것을 해 놔야지. 그것을 그냥 해 놓으면 자칫 잘못하면 나중에 그 土地를 빼앗깁니다, 나중에 언젠가는. 그러니까 그 用途自體 그 관계를 交通會館이든지 巡察隊 用地로다 確保해 놓으면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것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財務局長 孫長鎬; 그것에 대해서 答辯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所有는 엄연히 行政財産으로 서울市長 名義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당분간 使用하는데 돈을 안 받는다는 얘기지, 결국 저쪽에 뺏긴다는, 所有權 問題는 걱정 안 하셔도 괜찮고요. 이제 金委員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는 世宗文化會館으로도 擴張하는 文化施設 공간으로 確保하고 이런 施設은 좀 땅이 있다면 다른 데 옮겨가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로서 使用하는 것은 돈을 받을 수가 없다는 이런.....

○鄭興鎭 委員; 그것이 기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런 疑懼心도 있을 뿐만 아니라 靑瓦臺에도 우리 税金들 가지고 使用하고 있습니다. 血稅를 가지고 運營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땅히 有償으로 해야지요? 그래서 우리 豫算을 쓰고 있지 않

습니까? 無償으로 한다는 것은 어느 特定團體만 그런 特例를 준다면 國民이 똑같은 그런 혜택을 받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까?

○財産管理課長 權赫模; 지금 저희 서울시에서도 市가 國有財産을 占有하고 있는 것도, 많은 土地를 占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전부 우리가 無償使用을 하고 있습니다.

○鄭興鎭 委員; 그 比率이 어때요? 우리가 쓰고 있는 것과 國家에서 쓰고 있는 것과 比率이 어떻습니까?

○財産管理課長; 거의 비슷합니다.

○鄭興鎭 委員; 그럼 그 말씀을 하셔서 안되지요.

○財務局長 孫長鎬; 그래서 작년부터 그 作業을 계속 이어오고 있는데 이것은 財産 整理段階에 있습니다. 전부 바꿀 것을 바꾸고 精算할 것은 精算을 하고.....

○鄭興鎭 委員; 그렇게 하고 있는 과정이 있습니다만 줄속으로 해서는 안 되고, 특히나 부끄러운 얘기가 됩니다. 잘못하면. 그러면 우리가 國政을 맡겨놓은 大統領을 우리가 잘 보호해야 합니다, 그런데 協力해야 하고, 그런데 그렇게 無償으로 한다면 大統領이 法을 먼저 안 지키는, 稅金을 脫稅하는 그런..... 잘못 認識될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럼 靑瓦臺警護室이라면 더욱 形式上으로라도 稅金을 내는 것처럼 돼야 합니다.

○財務局長 孫長鎬; 靑瓦臺警護室 땅은 지금.....

○金瓚會 委員; 그것이 아니고, 바른 대로 얘기해야 돼요. 지금 機動隊는 일부 쓰고 있고, 지금 交通放送이 쓰고 있기 때문에 交通放送이 우리 施設을 지금 쓰고 있어요. 쓰고 있는데, 일부 巡察隊가 쓰고 있는 것을 그것만이라도 결국은.....

○鄭興鎭 委員; 無償으로 해 주고 있잖아요.

○金瓚會 委員; 無償으로 하자는 얘기니까, 제가 보기에 는 그 것이 원래, 저는 기우심에서 얘기한 것은 뭐냐 하면, 世宗文化會館의 廣場으로 쓰게 되어 있는 것인데 잘못하면 이것이 내 것이라고 해서..... 그런 問題가 안 생길까 그것 때문에 얘기한 것인데 그것은 기우가 없으니까 그런 問題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交通放送局에서 쓰고 있으니까 별로 問題가 없을 것 같아요.

○財務局長 孫長鎬; 交通放送局 밑에 마당을 巡察隊가 占有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같이 쓰고 있는 것이지요. 사실상 같이 쓰고 있는 土地입니다.

○委員長 李聲九; 鄭興鎭 委員, 됐습니까?

○鄭興鎭 委員; 네.

○委員長 李聲九; 더 質疑하실 委員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質疑하실 委員 없으시면 第7項에 대한 質疑 答辯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議事日程 第7項 '94市有財産管理計劃下半期變更(追加)2次計劃同意案을 서울特別市長이 提出한 原案대로 議決하고자 합니다.

異議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異議 없으시면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議事棒 3打)

.....

(참조)

94시유재산관리계획하반기변경(추가)2차계획동의안
(뒤에 실음)

.....
○委員長 李聲九; 다음은 議事日程 第8項 '95市有財産管理計劃同意案에 대해서 審査하겠습니다.

同 案件에 대해서 質問하실 委員님께서는質問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조금 전 우리 鄭興鎭 委員님께서 말씀하신 대신고 占用科 그리고 무궁화동산 土地交換에 대한 差額은 따로 書信 報告해 주시고, 아까 우리 金瓚會 委員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이 財産管理에서 나중에 임자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問題에 대해서 늘 財務局에서는 서울시 財産을 지킨다는 입장에서 參考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局長 孫長鎬;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聲九; 더 質疑하실 委員 안 계시면 質疑 答辯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議事日程 第8項 '95市有財産管理計劃同意案을 서울 特別市長이 提出한 原案대로 議決하고자 하는데 異議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異議 없으시면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議事棒 3打)

.....
(참조)

95시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뒤에 실음)

.....
○財務局長 孫長鎬; 土地課標 調整에 대해서 報告할 수 있는 時間을 좀 주십시오.

○委員長 李聲九; 時間이 얼마 걸립니까?

○財務局長 孫長鎬; 간단히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聲九; 네, 하세요.

○財務局長 孫長鎬; 委員 여러분께 資料는 配布를 해 드렸습니다.

95年度 土地課標 定期調整 推進狀況에 대해서, 간단히 제가 報告를 올리겠습니다.

基本方向은 新經濟 5個年 計劃의 土地課標 現實化의 計劃에 따라서 全國의 모든 土地中 現實化率을 30% 未滿의 土地를 30%가 되도록 調整하는 政府指針에 의거해서, 서울市の 95年度 土地 課稅時價標準額을 94年度 引上率 21.4%보다 조금 낮은 18.7%로 引上해서 24.9%의 平均 現實化率을 30% 水準으로 調整해서 내년 1月 1日부터 施行할 計劃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현재 筆地數가 84萬 4,000筆입니다. 94年度 公示地價가 308兆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4年度 24.9%, 현재 現實化率입니다, 24.9%를 課標 18.7% 引上해서 現實化率을 29.6%로 맞추는 것이 되겠습니다.

뒷편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5年間 課標調整 現況을 보면 上昇期인 89년부터 91년까지는 地價가 상당히 올랐고, 92年 이후는 다소 내린 形便에 있습니다. 現實化率은 90년에 23.1%가 94년에 24.9%가 되고, 내년에는 거의 30%에 가까워진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는 參考事項이 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理解해 주실 것은 土地時稅는 내렸는데 稅金은 왜 올라가느냐, 市民들이 그렇게 理解하실 市民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委員님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內務部 課稅時價標準額이 너무나 우리 市稅에 동떨어진 그런

課標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30%까지 어느 정도 全國的으로 平均化하고, 96年度께 가서는 稅率을 낮춤과 아울러서 公示地價를 課稅標準價로 할 수 있는 그런 政府方針입니다. 그런 데서 이것이 올라갔다는 것을 理解를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廉東秀 委員; 局長님께 몇 가지만 質問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稅率 現實化 方案이라고 해서 土地等級을 每年 올리지는 않습니까?

○財務局長 孫長鎬; 네.

○廉東秀 委員; 그런데 그 동안에 不動產 沈滯로 인해서 公示地價는 아마 거의 다 서울 全域이 내려가는 趨勢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奇現象이지요. 公示地價는 내려가고 土地等級은 올라간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土地等級을 올리는데 問題가 조금 있습니다. 물론 있는 사람은 더 내야 된다는 大統領方針이 있는 것으로도 알고는 있습니다만, 금년 예를 들어서 가령 土地等級 2·3等級이 오름으로 인해서 稅率이 어떻게 되느냐, 그 낮은 等級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별로 그렇게 上昇率을 모르는데, 가령 좋은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等級이 높은 사람, 가령 m²當 1,000萬원 짜리라든지 500萬원 짜리 이런 높은 땅들은 한 等級이 오름으로써 한 等級差額이 상당히 많습니다.

○財務局長 孫長鎬; 그렇습니다.

○廉東秀 委員; 가령 1等級에서 2等級 차이는 1원이다, 2원이다 할 것 같으면 高額의 差額은 몇 10萬원씩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그 몇 等級이 오름으로 인해서 稅率이, 작년에는 가령 100萬원을 냈는데 금년에는 200萬원을 냈다, 이렇게 더

블로 되는 이러한 현상이 옵니다. 그럼 내년에도 또 土地等級이 굉장히 오릅니다. 그렇게 되면 더블에다 또 더블을 내면 아마 있는 사람도 참는 것이 한계가 있는 것이지 그렇게 올라서는 稅金을 감당을 하겠느냐, 그래서 稅制抵抗이 올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것에 대한 對處方案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財務局長 孫長鎬;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같은 比率이라도 高價의 土地를 가진 사람이 稅金이 더 많은 것은..... 더 많게 느껴지고 또 아주 비싼 땅 같으면 아주 많은 돈을 내는 그런 기분이 들기는 하는데요. 물론 이것은 그런 뜻입니다. 돈 많은 분들에게는 좀더 많이 負擔하라는 그런 뜻인데 統計에 의하면, 이래도 10萬원 이하의 稅 負擔者가 우리 서울市에 77.7%입니다. 77.7%는 10萬원 이하의 稅 負擔者이고 남은 한 22% 정도가 많이 내시는 분들인데, 이 분들에게는 갑자기 오른 감이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土地實效稅率이나 不動產保有稅와 比較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아직도 不動產에 대한 稅가 外國에 비해서 엄청 적은 형편에 있습니다. 뒤에 參考資料가 나와 있습니다만, 적습니다. 그러나 일단 오른 것은 기분이 안 좋겠지요. 그러나 이것은 어차피 公示地價는 좀 낮아지고 現實比率은 높아지고 해서 어느 정도 가까운 그런 접근성을 보여야 되겠지요. 보여서 나중에 稅率을 낮춤과 동시에 公示地價로 一元化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다소 진통하는 過程에 있습니다.

○廉東秀 委員; 아니, 그런데 제 意見은 조금 다릅니다. 작년에 平均 한 20%가 稅率이 上昇됐다고 한다면 10萬원 未滿의 納稅者들은 기껏 올라봤자 5% 이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10萬원 이상이 20%밖에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들이 더블 내지는 따따블로 이렇게 稅金을 많이 냈기 때문에 포함되어서 그것이 20%이지.....

○財務局長 孫長鎬; 기분입니다.

○廉東秀 委員; 그런데 이것이 매년 조금씩 均衡的으로 올라 갔다면 稅制抵抗이 없겠지요, 별안간에 더블 또 내년에는 따따블 이렇게 올라가다가는..... 물론 있는 사람이 내는 것은 原則인데, 사실은 이 社會構造上도 물론 있다고 해서 다 社會奉仕하고, 社會의 어려운 일을 도와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있는 사람들 입김이 또 그 만큼 社會에 영향을 미친다 하는 것도 執行部에서는 생각을 해야만 되지 않을까 이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通過합시다」 하는 委員 있음)

○財務局長 孫長鎬; 廉委員님. 기분에 따따블 같지만 計算上은 따따블이 안 됩니다.

○委員長 李聲九; 아직 案件이 하나 남았습니다. 鄭興鎭 委員.

○鄭興鎭 委員; 사실 제 個人的인 생각입니다만, 昇進도 많이 하시고 자리바꿈도 많이 해서 尊卑 외기도 바뀝니다. 그런데 아주 유능한 우리 局長님이라 하실지라도 業務 파악을 제대로 하셨다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前 局長님 계실 때에도 그 盜稅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가 컸었습니다. 안심해도 된다고 해서 했는데 좀 빠죽 빠죽 나오는 것도 같습니다만, 極少數 公務員 때문에 大多數의 公務員이 이상한 느낌을 갖게 한다는 것은 局長님 責任입니다. 앞으로 잘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이런 條例案에 대해서 매스컴에 먼저 報道됐는데 저희들은 모릅니다. 그래서 그 條例案에 대해서 一般住民들이 저희들한테 물을 때는 우리는 명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條例案이라든가 業務報告 같은 것은 미리 委員들 各自에게 郵送을 해 주셔서 알고 숙지하고 있을 때에 우리들을 뽑아주신 有權者들, 또 市民들에게 說明할 수 있는 그런 機會를 마련해 주십사 이렇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9. 1994年度行政事務監査結果報告書採擇의件

(16時 03分)

○委員長 李聲九; 이상으로 財務局所管 案件을 마치고, 계속 해서 議事日程 第9項 1994年度行政事務監査 結果報告書 採擇의 件을 上程합니다.

(議事棒 3打)

地方自治法 第36條, 同法施行令 第16條 내지 第17條의10 그리고 서울特別市行政事務監査및調査에관한條例에 의하여 지난 11月 22日부터 30日까지 實施한 1994年度 行政事務監査에 대한 結果報告書を 配付하여 드린 油印物과 같이 作成 하였습니다.

行政事務監査 結果報告書에 대한 說明은 配付해 드린 油印物로 같음하고자 합니다.

本 報告書에 대해서 異議나 意見이 있으신 委員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同 報告書에 대하여 異議나 別途의 意見이 없으므로 議事日程 第9項 1994年度 行政事務監査 結果報告書는 原案대로 採擇되었음을 宣布합니다.

(議事棒 3打)

.....
(참조)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뒤에 실음)
.....

○委員長 李聲九; 委員 여러분 그리고 財務局長과 關係公務員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第12回 定期會 業4次 財務經濟委員會 會議을 모
두 마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議事棒 3打)

(16時 05分 散會)

○出席委員

李聲九 車在國 曹相彩

金璨會 裴丁洙 金炳植

趙熙濬 申尙澈 孟今龍

李秉守 廉東秀 趙石萬

鄭興鎭

○專門委員

安錫洙

○出席公務員

企劃管理室

室長 金義在

財務局

局長 孫長鎬

財務管理課長 權赫模